

제19조(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)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(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본인의 명단을 말한다)을 채용 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, 협회는 이를 종합해서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연합회에 보고해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31., 2019. 6. 28.>

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 명단에는 운전자의 성명 · 생년월일과 운전면허의 종류 · 취득일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.

③ 운송사업자는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력에 관한 기록 등 관련 서류를 협회에 이관하여야 한다.

④ 삭제<2011. 12. 31.>

⑤ 협회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· 관리하고, 운송사업자로부터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.<개정 2018. 12. 31., 2019. 6. 28.>

⑥ 운송사업자는 매 분기 말 현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 분기 첫 달 5일 까지 협회에 통지하여야 하며,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시 · 도지사 및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7. 11.>

⑦ 연합회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 · 관리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12. 29.]

제20조(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 등)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,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범죄경력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6. 17.>

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<개정 2013. 3. 23., 2018. 12. 31., 2022. 9. 30.>

1. 영 별표 1 제2호러목에 해당하는 인명사상사고

2. 「교통사고처리 특례법」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교통법규 위반

3. 별표 3의2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인명사상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

4.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이 운송사업자의 화물을 운송하다가 발생한 인명사상사고

③ 시 ·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을 제공받으려면 범죄경력자료를 요청하려는 운수종사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운송형태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.<신설 2020. 6. 17.>

④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(이하 “사업자단체”라 한다) 또는 운송사업자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 6. 30., 2019. 6. 28., 2020. 6. 17.>

[본조신설 2011. 12. 31.]

제20조의2(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의 구축 · 운영)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기록 ·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을 구축 ·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9. 6. 28., 2020. 6. 17.>

[본조신설 2011. 12. 31.]

제21조(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)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,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 12. 31., 2012. 12. 6., 2013. 7. 11., 2014. 11. 28., 2015. 5. 26., 2016. 1. 7., 2016. 6. 30., 2017. 1. 6., 2018. 12. 31., 2019. 6. 28., 2020. 6. 17., 2020. 12. 29., 2022. 9. 30., 2024. 7. 10., 2024. 12. 18.>